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9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 의 자 : 손 솔 · 최혁진 · 임미애
전종덕 · 용혜인 · 이주희
이용우 · 윤종오 · 정혜경
김종민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을 규정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규정한 제11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장소, 방법, 시간 선택의 자유를 포함함. 집회 및 시위를 통한 의사 표현은 주로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집회를 하느냐는 집회 자유의 핵심적 내용임. 오히려 국가 권력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집회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를 삭제함(안 제 10조 및 제11조 삭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 ----- ----- ----- ----- ----- ----- ----- -----. ----- ----- ----- ----- ----- ----- ----- ----- ----- ----- ----- -----.
<u>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u>	<u>1.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u>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

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

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

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

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

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u>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u> 2. (생략) 3. <u>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u> 4.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23조(벌칙) <u>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 1. ~ 3. (생략)	<u>또는 시위</u> 2. (현행과 같음) 3. <u>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u>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벌칙) <u>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	--